

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(20년 2월)

2020. 2 / 저작권상담팀(☎ 1800-5455)



(단어의 크기가 글수록 월간 절이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)

- (월간 워드 클라우드)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이용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화
 - (월간 주요 상담사례) 월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(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, 총 10개)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

순위	제작물 종류별	기타
1	영상	등록
2	캐릭터	이용
3	이미지	제작
4	사진	침해
5	폰트	유튜브

* 공유마당(<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>)의 롯데제과 ‘가나초콜릿체’ 글꼴로 작성

< 저작물 종류별 주요 상담 >

○ (영상)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영화, 애니메이션 등 영상을 재생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9조제2항¹⁾에 따라 허용되는가?

-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열거된 장소에서는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이 제한된다.
- 커피 전문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목²⁾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.

○ (캐릭터) 유명 만화 캐릭터를 따라 그려서 SNS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 법상 문제될 수 있는가?

- 유명 만화 캐릭터를 따라 그리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³⁾에 해당하고,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SNS에 올리는 경우 전송권⁴⁾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.

○ (이미지) 실존 인물을 이미지화한 캐리커처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?

-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⁵⁾를 말하므로, 캐리커처를 그린 사람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.

1) 제29조(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·방송)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) 제11조(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)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.

1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

가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「통계법」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(이하 "한국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

3) 제2조(정의)

22. "복제"는 인쇄·사진촬영·복사·녹음·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,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.

4) 제2조(정의)

10. "전송"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,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.

5) 제2조(정의)

2. "저작자"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.

- (사진) 클림트의 작품을 사진 촬영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되는가?
 - 클림트의 작품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- (폰트) 교육기관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무료 글꼴(폰트) 파일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가?
 -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,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⁶⁾.
 - 저작권자가 교육기관에서 해당 글꼴(폰트) 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 책임 및 라이선스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.

< 기타 주요 상담 >

- (등록) 법인 주소지가 변경되어 등록사항을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?
 - 등록된 사항(저작자의 성명, 주소, 제호 등)이 등록 이후 변경된 경우 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.
- (이용) 저작권자와 이용허락 계약을 할 때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는가?
 - 위원회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및 양도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. 해당 자료는 위원회 통합누리집(www.copyright.or.kr) 하단 서식다운로드 내 저작권 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(제작) 영화를 제작하면서 특정 곡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를 찾을 수가 없다. 어떻게 해야 하나?
 -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자세한

6) 제46조(저작물의 이용허락)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.

사항은 법정허락 담당자(☎055-792-0083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○ (침해) 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없는 무료 글꼴(폰트) 파일을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나?

- 공유마당(gongu.copyright.or.kr)을 통해 무료 글꼴(폰트)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각 글꼴(폰트) 파일의 이용조건을 준수해야 한다.

○ (유튜브) 유튜브 영상의 컨셉이나 소재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가?

- 저작권법상 '저작물'은 "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"을 의미하므로⁷⁾, 유튜브 영상의 컨셉, 소재 등 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없다.

※ 공유마당(<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>)의 네이버 '나눔스퀘어 라운드체' 글꼴로 작성



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(20년 2월) 저작물은 "공공 누리"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7) 제2조(정의)

1. "저작물"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.